보험의 이해 (Ⅳ)

공동집필 · 박해준 고문 A&Z 경영컨설팅(주)
정보영 이사 물류신문사
감 수 ·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목 차>

1. 보험
2. 약관
3. 보험계약
4.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5. 보험증권
6. 고지 의무
7. 손해보험
8. 초과보험
9. 중복보험
10. 일부보험
11. 화재보험
12. 운송보험
13. 해상보험
14. 적하보험
15. 책임보험
16. 자동차보험
17. 인보험
18. 생명보험
19. 상해보험
20. 상호보험
21. 자가보험
22. 희망이익보험

15. 책임보험(責任保險)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 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으로 분류된다. 또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任意責任保險)과 강제책임보험(强制責任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1962년의 제정상법 이전의 구상법에서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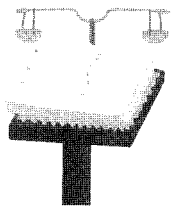

임보험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재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구상법하에서 책임보험은 보통보험약관 등의 특약에 의해서 그 법률관계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약관에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관한 특칙규정을 적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현행상법은 독립된 절로 책임보험일반에 관한 8개 조문을 두고 있는 이외에 일정한 강제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특정한 개개의 재화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이며, 그 배상책임의 담보가 되는 것은 피보험의 모든 재산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이므로 일반적인 물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을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보험약관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서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각 개인과 단일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책임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관자의 책임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목적물이나 책임의 최고한도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정하게 된다.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재판외 필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위의 필요비용의 선급·담보의 제공·공탁 등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①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 ②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請求)가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 자동차보험(自動車保險)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소유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는 사항외에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격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업무를 승계한다.

또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諾否: 허락함과 거절함, yes or no)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74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 제5조에 보험 등의 가입(자동차손해배상차임보장)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보험이다.

17. 인보험(人保險)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이다. 즉 사람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이 물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물건보험과 다르다. 1962년의 제정상법 이전의 구상법에서는 인보험중에서 생명보험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상법은 인보험이라는 독립적인 장을 두고 통칙규정과 인보험에서 대표적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같이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 있고, 또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경우도 있다.

피보험자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이를테면 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도 있을 수 있다. 인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보험도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보험의 경우 보험의 도박화(賭博化)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66조에 명기한 기재사항 이외에 ① 보험계약의 종류 ②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③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대위제도(保險者代位制度)를 두어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있으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성립될 수도 있지만 상법에 의해 금지된다.

즉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예컨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뒤라고 할지라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질 이외에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대립권(對立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